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50

발의연월일: 2021. 2. 17.

발 의 자:윤재갑·문진석·민홍철

설 훈·신정훈·위성곤

이개호・최강욱・홍문표

홍성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% 를 감면하고 있음.

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,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·고령화,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 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 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1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	제69조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
득세의 감면) ① 농지 소재지	득세의 감면) ①
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[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	
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	
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	
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	
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	
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	
이 조에서 "농업법인"이라 한	
다)에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6년 12월 31일</u>
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]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	
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	
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	
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	
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
지	처분	전에	농지	() 오	니의	토	지호	二
환>	지예기	정지	지정	을	받은	<u>-</u>	경우	<u>}</u>
에 {	는 주	거지 '	역등	에 1	편입	되;	거니	١,
환>	지예기	정지	지정	을	받은	<u>&gt;</u>	날끼	ነት
기	발신	생한 :	소득	으로	서	대	통령	1
령 .	으로	정하	는	소득	-에	대	해스	;-]
만	양도	E소득	세의	10	)0분	의	10	0
에	상딩	하는	세일	을	감민	변한	다.	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